

2. 세 출

(1) 세출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일반회계)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8.46%인 91억 6,637만 2천원이 증가된 1,175억 3,248만 6천원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일반회계)

<표1>

(단위 : 천원)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117,532,486	108,366,114	9,166,372	8.46

(2) 세출내역

투자부문(세세항)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액		당초예산액 대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17,532,486	100.00	108,366,114	100.00	9,166,372	8.46
경상예산	37,255,095	31.70	37,073,365	34.21	181,730	0.49
인건비	19,899,535	16.09	19,699,878	18.18	169,657	0.86
경상적 경비	17,385,560	14.79	17,373,487	16.03	12,073	0.07
사업예산	76,936,158	65.46	67,910,616	62.67	9,025,542	13.29
보조사업	55,899,854	47.56	51,795,096	47.80	4,104,758	7.92
자체사업	21,036,304	17.90	16,115,520	14.87	4,920,784	03.53
채무 상황	492,283	0.42	492,283	0.45		
지방채 상황	492,283	0.42	492,283	0.45		
채무부담행위 상황						
예비비 등	2,848,950	2.42	2,889,850	2.67	△40,900	△1.42
예비비	1,261,187	1.07	1,272,087	1.17	△10,900	△0.86
기타	1,587,763	1.35	1,617,763	1.49	△30,000	△1.85

소관 부서별 내역

<표2>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제2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액	당초예산액 대비(증△감)	당초예산 대비 증감율(%)
의 회 사 무 국	1,345,685	1,345,685	-	
기획총무위원회	41,720,880	41,378,992	347,888	
기획감사실	15,099,144	15,160,954	△61,810	
정보홍보실	1,132,389	1,030,489	101,900	
총 무 과	5,858,579	5,859,579	△1,000	
주민자치과	1,174,693	4,856,958	△3,682,265	
지방세과	40,900	413,479	△4,479	
경영회계과	1,705,197	1,689,217	15,980	
민원봉사과	172,969	172,369	600	
보 건 소	3,902,763	3,885,456	17,307	
문예시설관리사업소	5,121,754	1,208,624	3,913,130	
동 예 산	7,131,567	7,101,867	29,700	
사회도시위원회	74,459,921	65,641,437	8,818,484	
사회복지과	36,572,815	34,286,694	2,286,121	
환경관리과	119,043	101,943	17,100	
청소위생과	11,873,181	11,120,671	752,510	
경 제 과	3,490,626	2,588,181	902,445	
도시개발과	9,728,314	8,368,564	1,359,750	
교 통 과	193,794	189,994	3,800	
건 설 과	12,378,069	8,881,311	3,496,758	
건 축 과	104,079	104,079	-	
합 계	117,532,486	108,366,114	9,166,372	8.46

IV. 검토의견

서구청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와 자원조정특별교부금, 그리고 추가, 변경 제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일부 증가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보조금 구비부담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시 미반영 예산,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2003년도 기정예산대비 8.46% 91억 6,637만 2천원이 증액된 1,209억 9,69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2003년도 기정예산액 기정예산대비 8.46% 91억 6,637만 2천원이 증액된 1,209억 9,69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회계)

<표1>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안	당초예산액	당초예산액 대비	
			증(△)감분	증(△)감액
세 입	117,532,486	108,366,114	9,166,372	8.46
세 출	117,532,486	108,366,114	9,166,372	8.46

○ 예산의 성립전 집행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의 경우 예산의 성립전 집행액은 <표-2>에서 보는 것처럼 총 24건에 32억 63만 5천원으로 서 소요재원은 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재정의회주의의 원칙상 모든 예산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재량권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가 예산의 성립전 집행입니다(지방재정법 제36조). 다만 이 제도는 재정에 관한 대원칙인 재정의회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것으로써 그 요건 또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성립전 집행내역

<표2>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건수	집행내역	비고
주민자치과	1건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비(5,000)	
경제과	11건	◇시설비 -불암마을 배수로 및 농로포장(43,000) -세하동 배수로 및 농로포장(43,000) -서창난산마을앞 배수로 및 농로포장(43,000) -세동양수장 용수로 및 농로포장(43,000) -학산사 불암마을 주변 배수로 및 농로포장(43,000) -덕흥2 배수로 및 농로포장(43,000) -덕흥1 배수로 및 농로포장(43,000) -불암 뒷 배수로 및 농로포장(43,000) ◇공기관등 대한해행사업비 -병해충 긴급공동방제사업비(17,000) ◇기타보상금 -물가안정관리 인센티브 지급(3,678) ◇재해보상금 -태풍매미 피해복구 지원(338)	
사회복지과	1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471,619)	
도시개발과	4건	◇시설비 -영주 제1호어린이공원 외1개소 정비공사(211,500) -영주 제1호어린이공원 외1개소 정비공사실시설계비(6,000) -어린이공원 시설물교체공사(70,000) ◇시설부대비 -영주 제1호 어린이공원 외1개소 정비공사(2,500_	
건설과	6건	◇시설비 -도로개설 : 화정1동 내방마을(600,000) -도로개설 : 양동초등학교 주변(1,100,000) -도로개설 : 농성1동 10통 주변(200,000) -하수도개설사업 : 화정동 영주4거리 주변(50,000) -하수도개설사업 : 상무2동사무소 주변(50,000) -하수도개설사업 : 풍암동 운라초등학교 주변(50,000)	
특별회계	1건	◇본인 부담 보상금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19,000)	
합계	24건	3,200,635천원	

지 방 재 정 법

제36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 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용도가 지정된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상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수행케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하는 것과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구비 등을 말하며, 이러한 경비는 국가가 전액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재해복구비 중 정부가 부담지원하는 금액은 예산의 성립전에 집행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은 자치단체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예산의 성립전 집행을 이처럼 엄격한 요건 하에 행하도록 하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성립전 집행이 재정의회주의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긴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재정의회주의 원칙상 성립전 예산집행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재해대책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재해대책 기금의 적립)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전 3년 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본예산 편성 시부터 추경편성을 전제로 하는 것을 재정운용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년 제2회 추경재해대책기금 확보액

(단위 : 천원)

종 목	경 정	기 정	비 고
재해대책기금	100,840	70,840	30,000

위원회별 예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회 계 별	위원회별	본 예 산	수 정 액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합	계	119,935,762	38,835		119,896,927
일반회계	소 계	116,471,286	38,835		116,432,451
	운영위원회	1,345,685			1,334,685
	기획총무위원회	41,677,780			41,677,780
	사회도시위원회	73,447,821	38,835		
특별회계		3,464,476			3,464,476

V.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없 음

VI.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요지 (위원장 : 강 기 석)

- 가. 증 액 : 없음
- 나. 삭 감 액 : 38,835천원
- 다. 소수의견 : 없음

VII. 심사결과 : 수정의결 (별첨)

○ 심사결과 : 수정의결(별첨)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결특위 심사결과(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총괄 (세입) : 120,996,962천원

┌ 일반회계 : 117,532,486천원(원안 심사)
└ 특별회계 : 3,464,476천원(원안 심사)

▣ 총괄 (세출)

(단위 : 천원)

실·과 명		구청제출 예산액	심사결과		수정 예산액
			감액	증액	
총계		120,996,962	38,835	38,835	120,996,962
일반 회 계	소계	117,532,486	38,835	38,835	117,493,651
	운영위원회 소관	1,345,685	0	0	1,345,685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41,726,880	0	0	41,726,880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74,459,921	38,835	38,835	74,459,921
특별회계		3,464,476	0	0	3,464,476

[운영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관		구청제출 예산액	수정액		수정 예산액	사유 및 내역
항	세항		감액	증액		
합 계		1,345,685	0	0	1,345,685	
의 회 사 무 국		1,345,685	0	0	1,345,685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관		구청제출 예산액	수정액		수정 예산액	사유 및 내역
항	목		감액	증액		
합 계		41,726,880			41,726,880	
기 획 감 사 실		15,099,144	0		15,099,144	
기획감사관리	기획감사관리	364,663			364,663	
	예산운영	13,473,294			13,473,294	
정 보 홍 보 담 당 관		1,132,389	0		1,132,389	
정보통신관리	정보통신관리	1,018,728			1,018,728	
	홍보관리	113,653			113,653	
총 무 과		5,858,579	0		5,858,579	
총무관리	총 무 관 리	1,321,306			1,321,306	
	행정지원관리	3,791,978			3,791,978	
문화예술관리	문화예술관리	333,506			333,506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422,912			422,912	
주 민 자 치 과		1,174,693	0		1,174,693	
총무관리	주민자치관리	366,053			366,053	
문화체육관리	체육진흥관리	674,010			674,010	
사회복지관리	청소년복지	131,653			131,653	
지 방 세 과		409,000	0		409,000	
재무행정	지방세관리	408,818			408,818	
경 영 회 계 과		1,705,197	0		1,705,197	
총무관리	회계관리	433,054			433,054	
	시설관리	1,185,294			1,185,294	
	재산관리	29,049			29,049	
민 원 봉 사 과		172,969	0		172,969	
총무관리	민원실운영	89,793			89,793	
도시계획관리	지적관리	82,856			82,856	
보 건 소		3,902,763	0		3,902,763	
보건관리	보건소운영	3,874,252			3,874,252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5,121,754	0		5,121,754	
문화체육관리	문화센터운영	5,029,474			5,029,474	
동 예 산		7,131,567	0		7,131,567	
총무관리	행정지원관리	7,131,567			7,131,567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관		구청제출 예산액	수 정 액		수 정 예산액	사유 및 내역
항	목		감액	증액		
합 계		74,459,921	38,835	38,835	74,459,921	
사 회 복 지 과		36,572,815	0	0	36,572,815	
환 경 관 리 과		119,043	0	0	119,043	
청 소 위 생 과		11,873,181	38,835	38,835	11,873,181	
환경관리	청소관리	251,549	30,000	0	221,549	· 가로환경미화요원 퇴직금
		8,835	8,835	0	0	· 가정청소대행사업비 이윤
		775,594		38,835	814,429	· 위생매립장, 상무소각장 생활폐기물 반입료
경 제 과		3,490,626	0	0	3,490,626	
도 시 개 발 과		9,728,314	0	0	9,728,314	
교 통 과		193,794	0	0	193,794	
건 설 과		12,378,069	0	0	12,378,069	
건 축 과		104,097	0	0	104,097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관		구청제출 예산액	수 정 액		수 정 예산액	사유 및 내역
항	세항		감액	증액		
합 계		3,464,476	-		3,464,476	
의료보호기금		88,329	-		88,329	
주 차 장		3,376,147	-		3,376,147	